

의안번호	제 424 호
의 결 연 월 일	2009년 10월 일 (제284회)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송은섭 의원 외 21인
발의연월일	2009년 9월 21일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

(송은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24
----------	-----

발의연월일 : 2009년 9월 21일

발 의 자 : 송은섭·심홍섭·이영복·민경환·강태원·장주식·박재국·이필용·이범윤·임 현·최재욱·김광수·최미애·정윤숙·이종호·이기동·오용식·김법기·한창동·김화수·박종갑·박영웅(22인)

1. 제안 이유

-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하는 미래 농업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귀농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귀농대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나. 농업·농촌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귀농인의 책무 규정(안 제4조)
- 다. 귀농인의 육성·지원을 위한 주요 사항(안 제5조)
- 라. 귀농 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안 제8조)
- 마. 귀농인의 정착을 위한 정착자금 지원과 시설보조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안 제10조)
- 바. 귀농인 지원 자금의 관리·정산·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사. 귀농인에게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관한 지원취
소와 회수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조례안 : 불 임

4. 관계법령 발췌 : 불 임

5. 관련부서 협의 : 농정국 농업정책과

6. 예산조치 : 자체 세부계획수립시 재원확보

7. 입법예고 : 2009.08.27 ~ 2009.09.15(특이의견 없음)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와 제25조에 따라 충청북도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인”이란 만 60세 이하의 자가 다른 시·도(시·군 포함)에서 1년 이상 농업이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귀농인의 집”이란 농촌지역으로 귀농하거나 귀촌을 희망하는 자가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조성되는 집을 말한다.
4. “농촌지역”이란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단, 특별시·광역시 지역은 제외)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와 제9조에 따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귀농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귀농인 지원 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귀농인의 책무) 귀농인은 교육, 주택, 창업자금 등 행·재정적인 지원

을 받아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조속히 정착하여 농업·농촌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5조(육성·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귀농인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농인 유치·홍보·교육, 재정확보 등에 관한 사항
2. 귀농인의 자격과 지원사업,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3. 귀농인의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도와 시·군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귀농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육성·지원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육성·지원계획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당해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육성·지원계획의 심의) 도지사는 충청북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로 하여금 귀농인의 육성·지원계획을 심의하도록 한다.

제7조(귀농 정보제공)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효율적 귀농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보의 제공
2. 귀농정책을 신속히 안내할 수 있는 상담요원과 귀농상담전용 전화의 설치·운영

제8조(교육훈련 지원) ① 도지사는 귀농인이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귀농인이 영농을 체험하기 위한 귀농인 농업인턴제 사업을 실

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귀농인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정착자금 지원) 도지사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귀농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농업창업자금 및 경영자금 융자
2.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융자

제10조(시설보조) ① 도지사는 귀농인이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포함한다)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귀농희망자가 영농기술 습득, 주택·농지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 도지사는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을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관리·정산·지도·감독 등을 해야 한다.

제12조(지원의 취소와 지원금의 회수 등) ① 도지사는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귀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보조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융자금 상환기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였을 경우
4.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보조금 회수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군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제4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

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소비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① 농림부장관은 미래의 농업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으로 선정하고 영농 정착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후계농업경영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자금 지원 및 농업 기술·경영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나목에 따른 농촌 지역 [제2008-115호, 농림수산식품부고시, 2008.12.1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읍·면지역
2.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3.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고시의 적용에 관한 특례) 농림부고시 제1995-86호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에 대하여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3. (종전의 농어촌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부고시 제1995-86호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지역 중 이 고시에 따른 농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시행중인 사업은 그 사업에 한해 완료될 때까지 당해 지역을 이 고시에 따른 농촌지역으로 본다.